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95
----------	-------

발의연월일 : 2026. 10. 6.

발 의 자 : 문진석 · 진선미 · 박상혁
백승아 · 최혁진 · 김한규
김동아 · 김용만 · 문정복
한민수 · 김문수 · 박정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 등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후 해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의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나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과정에서 지급된 보수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시 보수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나 패소처분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그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장의 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시 보수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3조의4(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시 보수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나 패소처분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그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u>